

오픈뱅킹 도입의 영향과 향후 과제

2019. 4. 15.

서 정 호

Table of Contents

- I. 오픈뱅킹의 의의
- II. 주요국 추진 동향
 - 1. 영국
 - 2. 호주
 - 3. 일본
 - 4. 우리나라
- III. 오픈뱅킹 도입의 영향
 - 1. 기대효과
 - 2. 리스크 측면
- IV. 향후 과제
 - 1. 정책적 시사점
 - 2. 경영 과제

Open Banking

- 제3자가 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또는 제도(정책)

오픈뱅킹
정책

- 참여기관 및 참여조건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예: 대형은행, 전체은행 → 핀테크(TPPs) 등)
- 접근 대상 계좌의 범위, 기능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결제계좌 → 예금계좌, 신용카드 거래 계좌, 대출계좌 등)
- 접근방식은 대부분 Open API 방식을 따름.

“Easier Access to Data”

- ✓ Compare the details of banking services (single view)
- ✓ Debt and cash flow management
- ✓ Give consumers more choice and more control over their money and financial data

- OBIE, U.K.(2018)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

- 2017.10월 영국 CMA(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는 소매금융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Order 2017("The CMA Order")』를 발표하고 2018.1.13일부터 시행
 - 영국의 9개 주요 은행(Allied Irish Bank, Bank of Ireland, Barclays, Danske, HSBC, Lloyds Banking Group, Nationwide, RBS Group and Santander)은 Common API framework을 의무적으로 채택 (여타 기관들은 voluntary API providers)
 - 고객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가 있을 경우 오픈 API를 통해 current account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current account



- 일반적인 자유 입·출금 계좌
- 수표발행이 가능하지만 이자는 없음

- Open Banking Standards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
 - 표준화된 API 요건(specifications) 제정, 보안 표준 결정, Open Banking Directory를 통해 참여기관 관리, 민원(complaints) 및 분쟁(disputes) 관리

영국 오픈뱅킹의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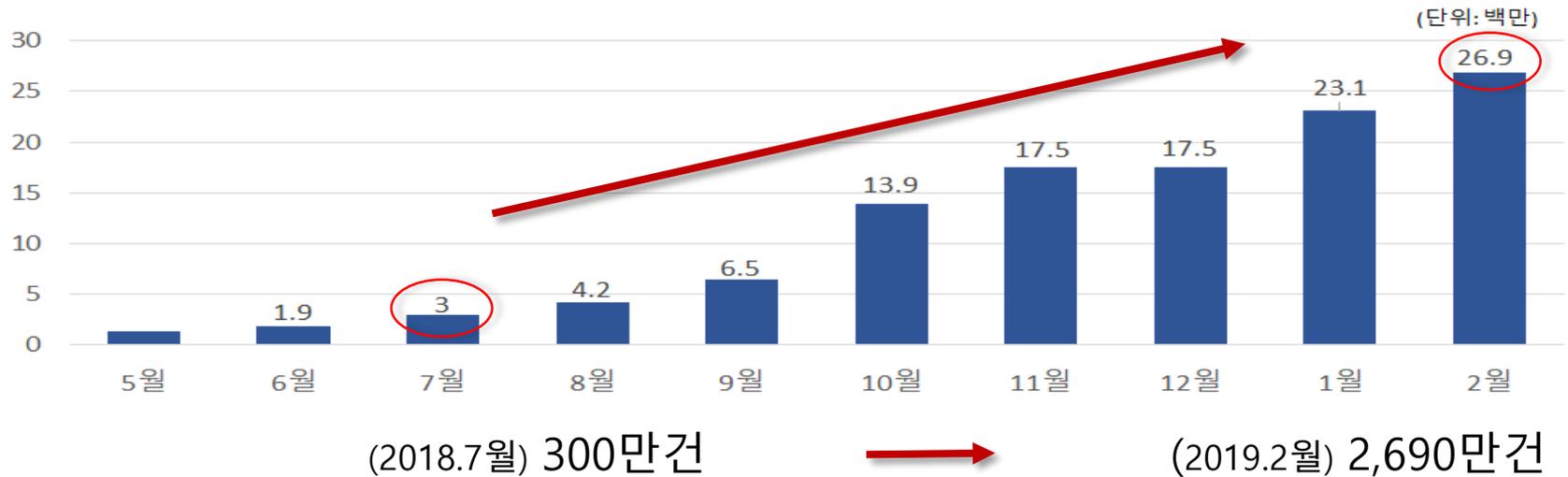
• 오픈뱅킹 등록 현황

(2019. 2월말 기준)

110개의 오픈뱅킹서비스 제공업체

- 76개 TPP(Third Party Provider)
- 34개 Account Providers

• 오픈뱅킹 API를 통한 호출건수



자료: openbanking.org.uk

호주의 오픈뱅킹 정책 [1]

- 2018.2월 호주 재무부, Open Banking 추진방안 발표 → '20.2.1일 시행
- 추진목적
 - “..give customers **more control over their information**, leading to more choice in their banking and more convenience in managing their money, and resulting in more confidence in the use and value of an asset mostly undiscovered by customers – their data.”
- 대상 및 범위
 - 데이터 공유대상 포함: Customer-provided data, Transaction data(특정 계좌에 한함), Product data
 - 데이터 공유대상 불포함: 실명인증 관련 데이터, 고객 ID의 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차 가공정보 등
 - 4대 은행(CBA, NAB, ANZ, Westpac)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예금 및 당좌계좌, 모기지 등 모든 상품(phase 1, 2, 3) 데이터 제공
 - 나머지 은행(ADIs)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오픈 API 제공 의무 부여

<참고> 호주 오픈뱅킹 대상 금융상품

예금상품	대출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vings accounts• Call accounts• Term deposits• Current accounts• Cheque accounts• Debit card accounts• Transactions accounts• Personal basic accounts• GST and tax accounts• Cash management accounts• Farm management accounts• Pensioner deeming accounts• Mortgage offset accounts• Trust accounts• Retirement savings accounts• Foreign currency accou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rtgages• Business finance• Personal loans• Lines of credit (personal)• Lines of credit (business)• Overdrafts (personal)• Overdrafts (business)• Consumer leases• Credit and charge cards (personal)• Credit and charge cards (business)• Asset finance (and leases)

자료: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Review into Open Banking (2017)

호주의 오픈뱅킹 정책 [2]

- ACCC(경쟁당국) : 소비자정보권(consumer data right) 도입 및 대상 결정
- CSIRO(연방종합연구소) : 데이터 표준 규정

경쟁법 개정

- ACCC : 법제화
- OAIC, ASIC, APRA : 지원
- RBA : 자문
- 기술표준 제정
(technical standards)
동시 추진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데이터 이전

- 표준 API
사용 권고
- 데이터 표준
: 기술중립적,
유연성 유지
- Screen scrapping
: 제한적 이용

Data Transfer

소비자정보권

- 은행산업에
우선적용
- 에너지, 통신
등 기타
분야로 확대

Consumer Data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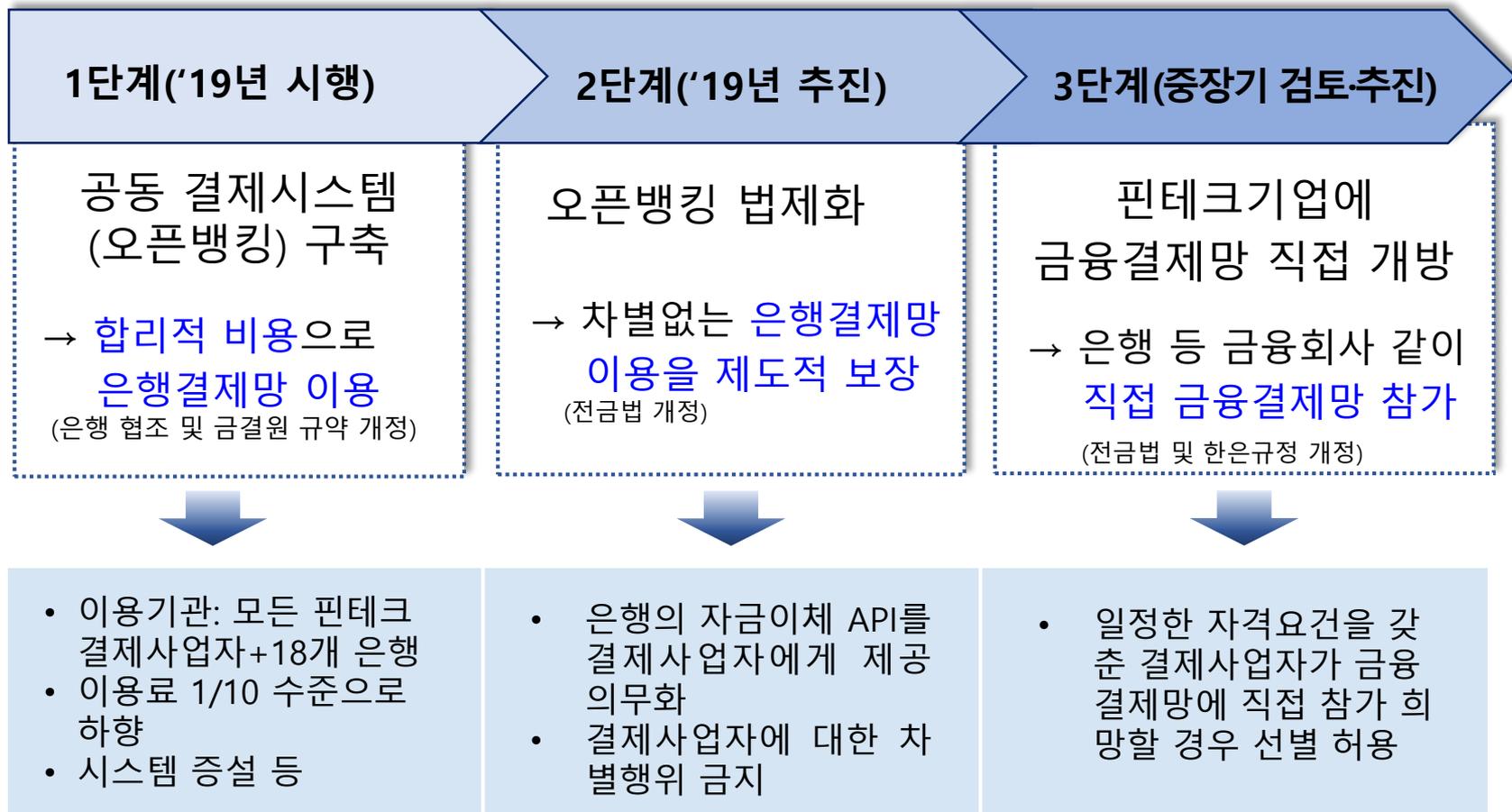
일본의 오픈뱅킹 정책

- 일본은 2017.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
 - “은행은 2018년 3월까지 API 이용업체간 제휴 및 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개정 은행법 부칙 제10조 제1항)”고 명시
 - 개정 은행법 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법 시행 후 2년 내에 **은행은 API 오픈을 위해 노력(‘노력 의무’)**해야 한다고 적시
 - 고객보호를 위해 은행과 API 이용업체간 은행법이 정한 내용(배상책임, 개인정보 취급 등)을 약정해야 함(개정 은행법 제52조의6의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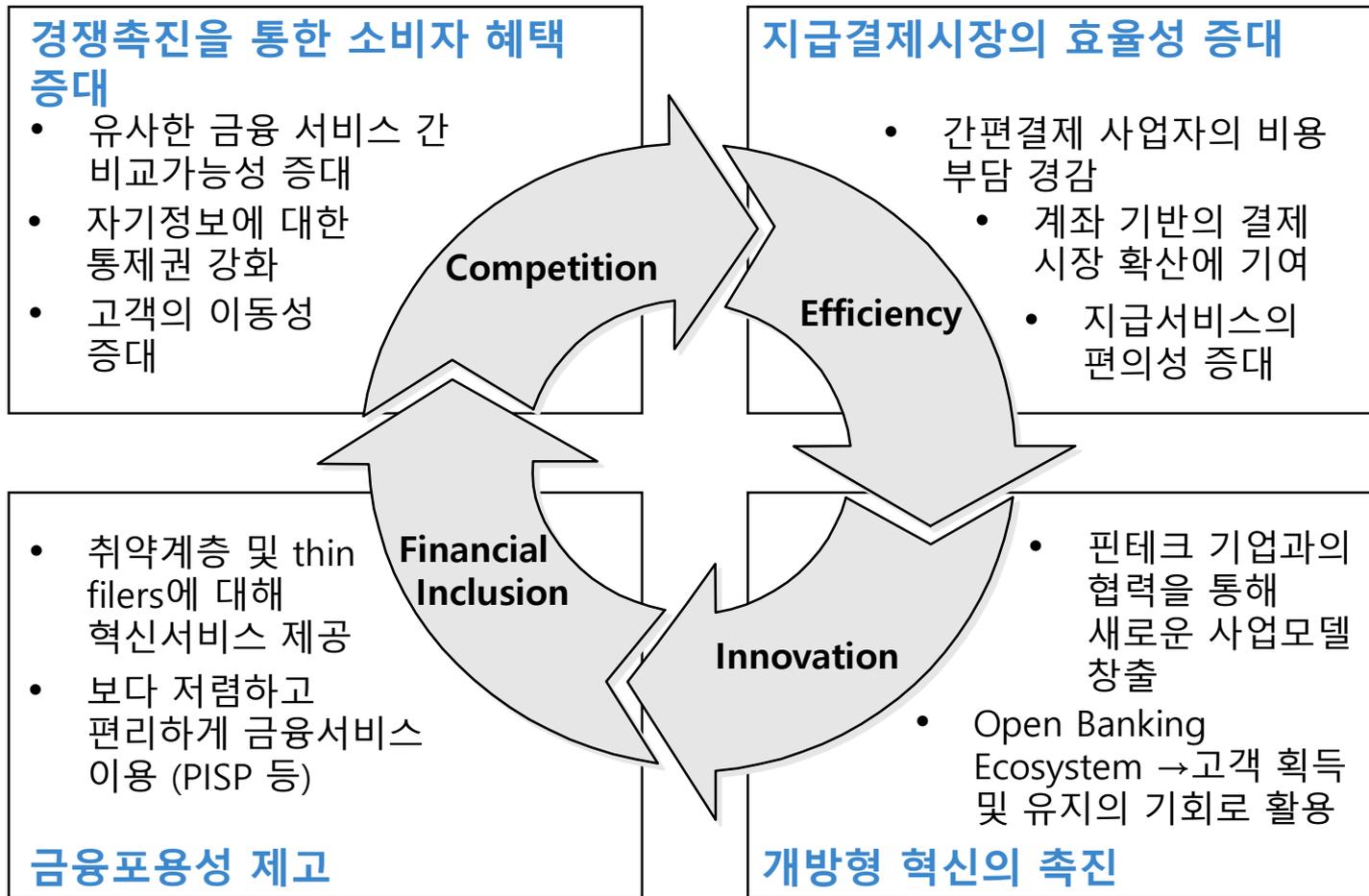
- 현금사용을 현격하게 줄이겠다는 일본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
 - 2020년까지 비현금사용비율(cashlessness)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
(정부 목표: 80개 은행)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오픈뱅킹의 기대효과



<참고> 오픈뱅킹 관련 新서비스 도입 사례

금융사 명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
HSBC	오픈뱅킹 앱(Connected Money)을 통해 고객의 당타행 당좌 및 저축계좌, 모기지, 대출, 카드 관련 데이터를 집약하여 제공. 고객의 지출을 3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 ⇒ 고객의 예산관리 지원
Santander	Moneybox 앱과 제휴를 통해 고객 계좌와 연동하여 지출 및 금융거래 후 발생하는 소액의 거스름돈 (예: 1파운드 미만)을 저축계좌 혹은 투자상품으로 자동 이체 ⇒ 고객의 저축 활동 지원
Barclays	별도 앱을 통해 당타행계좌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 특히, 보안기술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묻지 않고도 안전하게 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Starling Bank	별도 플랫폼 'Marketplace'를 통해 고객 계좌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 플랫폼에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결합 (예: Wealthify - Isa, 투자상품 제공 / Yoyo Wallet - 리워드 및 포인트 자동 수집 / Pension Bee - 연금현황 확인 / Habito - 온라인 모기지 브로커 등)
DBS	API 개발자 플랫폼(DBS Developers) 공개 맥도날드, So cash 등과 제휴하고 API 활용 서비스 제공
Citi	자산관리앱 Intuit에 계좌, 인증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송금내역, 잔고 등 조회 서비스 제공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참고하여 재작성

오픈뱅킹의 리스크 측면

주요 이슈

공 통

- 오픈뱅킹시스템의 보안성·안정성 유지
- 단일 시스템 상에서 작동할 경우 집중화(concentration)에 따른 리스크 상존

제공기관의 리스크

- 고객접점의 이동 → 채널 재조정
- Identity theft, data protection violation 등의 리스크 존재
- 자체 API의 경우 요건의 변화 가능성

이용기관의 리스크

- Data loss, Identity theft, data protection violation, money laundering 등의 리스크 존재
- 중소형 기업이 고객 금융정보를 직접 보관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

오픈뱅킹의 표준화,
거버넌스의 정립,
Compliance 요건
제정

정책적 시사점

- **오픈뱅킹의 법제화** (2019년 3분기중 전금법 개정 추진)
 - 각행 자체 오픈 API 운영에 대한 일반적 규율도 필요
 - API 표준(standards)에 논의 필요
- **금융혁신3법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금융혁신법』 간의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함** → 법제 정비
 - 빅데이터 활용 촉진, 개인신용정보전송권,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API (신정법)
 - 지급지시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태의 허용(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법)
- **공동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유지**
 - API 이용 시 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
- **인증 책임의 주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 **오픈 API의 확산으로 금융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1社 전속주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

경영 과제

- 은행-핀테크 간, 은행-은행 간 “Co-petition” 심화
- 은행업의 플랫폼화(“Banking-as-a-Platform”) 촉진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 온라인 접점의 경쟁력 강화
 -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제휴,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 UX/UI의 지속적 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화
- ✓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API 이용자의 적격성 판단 필요
- ✓ 오픈 플랫폼 구축, 활용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및 추진
 - 플랫폼 상 모든 참여자(developer, supplier, consumer)들에게 value를 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서정호,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은행의 혁신전략」, 2018.12월, 한국금융연구원 참조